

# 검 토 보 고 서

| 안 건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부서명 | 페이지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
| 1.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<br>일부개정조례안 | 총무과 | 1   |

( 2012. 7. 2 )

**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**

**[ 전문위원 명 금 길 ]**

## **1. 안 건 명**

가.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**2. 제출일자 및 제출자**

가. 제출일자 : 2012년 6월 12일

나.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## **3. 의안 회부일자**

가. 2012년 6월 14일

나. 의안번호 : 12-47

## **4. 관련근거**

가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46조(실비보상등) 제1항

## [검토보고]

#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동 조례안은 최근 당직근무시 각종 민원 증가로 당직 근무의 부담이 가중되어 직원들의 불만 및 애로사항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물가상승률을 비교할 때 2006년 당직 수당이 인상된 후 현재까지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고, 또한 우리 구는 자치구 평균보다 적은 수당을 받고 있어 당직 근무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 당직수당을 인상하고자 제출된 것임.

### < 주요내용 >

현재 일·숙직 당직근무자별로 당직시마다 50,000원씩 지급하던 것을 10,000원이 인상된 60,000원을 지급하고, 휴일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중 근무의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20,000원을 인상하여 70,0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함.

### < 검토의견 >

동 조례안은 최근 각종 생활민원이 폭증하여 당직근무에 어려움이 있어 당직근무 직원의 불만과 애로가 가중되고 있는 반면,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6년 동안 한 번도 당직수당에 대한 인상이 없었으며,

서울시 자치구와 비교할 때에도 평균적으로 적은 수당을 받고 있어  
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지만,  
올 8월부터 시행할 경우 2천 7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므로  
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,  
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와 임법예고  
등을 거쳐 절차상으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